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2. 6(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11. 11

나. 제안자 : 신현환 의원(대표발의)

- 강병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11. 11

라. 상정일자 : 2013. 12. 06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신현환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관람료 무료화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박물관 관련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식 보급을 통하여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 국내·외 변화된 박물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롭고 다양화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2장 전시실 및 시설의 이용」을 「제2장 관람」과 「제3장 대관」으로 구분함(안 제5조 ~ 제11조)
- 박물관 관람료 징수 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박물관 시설 대관 기준 및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고 대관시설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추가함(안 제11조)
- 효율적인 유물수집과 내실있는 유물평가를 위하여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를 신설하고 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5장 제28조 ~ 제31조)
- 자원봉사자(전시 해설사 포함)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 ~ 제39조)
- 별표 1의 시설사용료(제15조 관련)를 개정함(안 별표 1)
- 별표 2의 박물관 자료 이용료(안 제 37조 관련)를 현실화 함(안 별표 2)

3. 입법예고기간¹⁾중 제출 의견 : 없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는 시립박물관과 3개의 분관(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2005년부터 「인천광역시

1) 2013.11.18 ~ 11. 28 (10일간)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동안 동 조례에 따라 박물관의 상설전시 관람료를 징수(성인 400원, 군인 200원)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관람료 징수에 따른 수입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국립박물관을 비롯 서울, 부산, 울산 박물관 등 다수의 박물관에서 무료관람을 시행중으로 이는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 고취를 위한 취지로 보임.

상설전시의 관람료 무료화로 인해 연간 700~800만원 정도의 박물관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립박물관이 점차 변화해가는 환경에 부응하여 대 시민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상설전시의 무료관람 전환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시립박물관의 상설전시를 무료 관람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과소 책정된 유물 이용료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근거 부재 등의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012년, 2013년도 박물관 상설전시 관람료 수입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수입	8,450,600원	6,608,000원

나. 주요 내용

○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등(안 제5조, 제6조)

안 제5조는 자체 기획전, 순회 전시, 대관 전시를 제외한 상설전시에 대하여 유료관람에서 무료관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자체 기획

전의 무료관람 대상을 ‘18세 이하’ 에서 ‘취학전 아동’ 으로, 유물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무료관람 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임.

○ 박물관 대관 시설 명시 및 사용료 등(안 제11조, 제15조)

안 제11조 및 제15조(별표 1)는 시립박물관 및 분관의 대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사용료가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시립박물관 우현마당,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정원,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용 슬로프,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강당 등의 대관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임.

그동안 조례상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았던 송암미술관(정원)의 경우 사용료 징수 사례²⁾가 있었으나, 조례로 대관시설을 명시하고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간 혼선을 방지하고 향후 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유물수집 및 관리 관련 장·절 조정 및 내용 수정(안 제28조, 제31조)

현행 조례에는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제4장 심의회와 제5장 유물수집의 2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심의회의 경우 구입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물수집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며, 제5장 유물수집에는 유물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2) 최근 3년간 대관 실적

구 분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횟 수	없음	1회	없음
기 간	-	2013. 5.28~6.5	-
대관대상	-	인천조형작가협회	-
징수금액	-	329,000원	-

관련내용을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단일 장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개정안에 신설되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현재 박물관자료평가실무위원회로 자체 운영중에 있으며 유물의 가치 및 진위 평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효율적 운영 및 근거 규정 강화를 위해 조례에 명시하고, 유물평가심의회는 기존 박물관운영위원회 안에 두었던 박물관자료평가 심의회를 독립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항임.

〈타 박물관의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현황〉

구분	인천시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부산박물관
회의명	박물관자료평가 실무위원회	1차 평가위원회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유물수집자체평가 위원회
조례규정	×	○	○	○

심의회 경우, 위원 임기가 1년이며 현실적으로 유물 평가는 매회 구입 유물의 종류와 내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당해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고 심의회를 독립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은 심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서울, 부산, 울산 등 주요 박물관의 심의회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38조)

안 제38조는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교통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임.

현재 박물관에는 유물 도슨트, 체험교사 등 1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음. 이들은 박물관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아울러, 현재 관련 예산(자원봉사자 교통비·식비)은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는 사항은 아님.

○ 교육수강료 및 실비 징수 근거조항 신설(안 제39조)

안 제39조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현재 박물관에서는 5개 분야 13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중에 있으며 이 중 1개의 어린이가족교육 프로그램에서만 재료비(5,000~10,000원)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향후 예산의 제약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와 대상자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최소한의 수강료 및 실비(재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임.

〈2013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교육명	대상	인원	강의운영	주제 및 내용	소요예산
성인교육	박물관대학	일반시민	회당 140명	년16회	인천 및 한국의 역사와 문화전반 (강의 및 답사)	6,900천원
	박물관 시민강좌	일반시민	회당 200명	월1회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주제 공개강의	8,674천원
	인문학강좌	일반시민	회당 140명	년16회	인문학관련 공개강의	1,350천원
	타박타박, 인천	일반시민	회당 20명	년2회	인천의 역사문화길 도보답사	없음
전문직교육	선생님을 위한 문화교실	초중등교사	회당 80명	1주30시간	교과관련 역사와 문화 주제 강의 및 답사	5,614천원
청소년교육	유지엄+드림캐쳐	중학교 단체	회당1학급	학기중	박물관 관련 직업군 탐색	2,300천원
	유지엄+드림하이	고등학교 단체	회당1학급	학기중	박물관 관련 직업군 심층 체험	
	상상공작소	고등학생	회당 30명	5주	교과관련 인천 근현대사 UCC제작	2,000천원
어린이가족교육	상설체험교실	초등생	회당 10명	매일6회	탁본, 도자기, 고건축, 발굴 등 체험실습	12,500천원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가족	회당 20팀	월1회	가족대상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4,780천원
	박장대소, 토요일	가족	1일 40팀	월1회	가족대상 전시실 교육 프로그램	4,800천원
	가자! 박물관으로	어린이단체	회당 1학급	연중	역사, 문화 관련 주제 체험	16,020천원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일반시민	150명	연중	인천의 역사·문화관련 소양교육	5,350천원

○ 박물관의 유물 이용료 상향 조정(【별표 2】)

【별표2】는 타 국·공립박물관의 1/3 수준인 유물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2013년도 이용료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례 개정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연 10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상향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소장유물의 가치 및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주요 박물관 유물 이용료 현황〉

구 분		인천시립 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고궁 박물관	서울역사 박물관	부산시립 박물관	비고	
사진촬영		10,000	30,000	30,000	30,000	20,000		
탁본		10,000	30,000	30,000	30,000			
모조(실측)		10,000	30,000	30,000	30,000			
모사(실측)		10,000	30,000	30,000	30,000			
사진원판사용	필름	5,000	30,000	20,000	30,000	디지털 10,000 허가 5,000		
	디지털		대	30,000	20,000			30,000
			중	20,000	10,000			20,000
			소	5,000	5,000			5,000

[별첨]

I 시립박물관 일반현황

■ 기구 및 인력

구 분	본 관				분 관		
	계	관리과	전 시 교육과	유 물 관리과	송 암 미술관	검 단 선 사 박 물 관	한 국 이 민 사 박 물 관
정 원	36	11	4	5	6	5	5
현 원	36	10	4	5	6	5	6
과부족	-	▽1	-	-	-	-	△1
무기계약인원	20	1	5	5	4	3	2

※ 현원 중 휴직자 등 현황 → 본관(관리과) : 파견근무 1명, 육아휴직 1명

■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관	송암	검단	이민사	공통경비
2013	5,861,695	1,217,743	417,315	318,081	390,916	3,517,640

■ 관 램 인 원

(2013.10.31.현재)

구 분	연 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본관	'12	98,075	5,673	5,237	4,902	8,303	10,302	11,189	7,038	16,382	11,059	6,141	7,389	4,460
	'13	65,885	4,050	4,393	5,311	6,361	7,733	8,517	5,366	10,152	8,145	5,857	-	-
송암	'12	13,736	1,279	767	560	1,491	1,089	1,568	915	2,201	607	1,608	1,322	329
	'13	11,504	632	440	761	1,278	901	1,215	640	3,346	1,060	1,231		
검단	'12	34,635	2,779	1,858	2,036	3,094	2,316	2,549	2,417	5,360	4,689	2,224	2,322	1,903
	'13	27,680	3,195	1,545	2,769	2,147	2,165	2,515	2,080	4,130	3,977	3,157	-	-
이민사	'12	115,588	4,353	4,645	8,316	17,112	18,134	10,102	6,811	9,019	8,875	14,056	9,614	4,551
	'13	142,614	4,981	4,351	12,244	23,468	27,135	15,646	9,045	14,174	13,225	18,345	-	-

II 특·광역시 조례 운영현황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운영 및 전시품 관람에 관한 규정(무료)
2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무료)
4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관리위탁조례	진열품의 관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함
5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무료)
6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7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무료)
8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유물현황

○ 소장유물

- 소장유물 수량

총	본관	송암	검단	한국이민사
28,772점	10,632점	9,385점	13점	8,742점

- 지정문화재 : 시유형문화재 5점, 기념물 1점, 문화재자료 2점

연번	구분	자정번호	명 칭	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자정일자
1	유형	3	원대철제범종	1기	옥련동 525	시장(시립박물관)	82.3.2
2	유형	4	송대철제범종	1기	"	시장(시립박물관)	82.3.2
3	유형	5	관음좌상	1기	"	시장(시립박물관)	82.3.2
4	유형	13	목조여래좌상	1구	"	시장(시립박물관)	90.11.9
5	유형	14	목조보살좌상	1구	"	시장(시립박물관)	90.11.9
6	기념물	34	학익 지식묘	1기	"	시장(시립박물관)	95.11.14
7	문화재자료	4	각국조계석	1기	"	시장(시립박물관)	90.11.9
8	문화재자료	6	아세주묘 출토관당개	2개	"	시장(시립박물관)	94.11.4

- 국가귀속 유물 보관·위탁관리 ----- 총 4,897점
- 보관관리 : 1,394점 - 위탁관리 : 3,503점

■ 시설현황

- 위치 : 연수구 옥련동 525번지
- 면적 : 대지 10,739m²(2,333평)/ 연면적 5,830m²(2,554.3평)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전시실(5실), 수장고(4실), 강당(1실), 교육·강의실(2실) 등

■ 운영경과

- 1946. 4. 1 박물관 개관(중구 송학동 1가)
- 1953. 4. 1 박물관 이전복관(제물포구락부)
- 1989. 5. 4 현부지로 박물관 이전개관
- 2004. 4. 1 전시관 신축 및 보수공사 실시
- 2006. 7.10 시립박물관 재개관
- 2008. 1.11 송암미술관 및 검단선사박물관 분관으로 편입
- 2012. 2.27 한국이민사박물관 분관으로 편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강병수·박순남·제갈원영 위원

- 시립박물관 관람료의 무료 전환의 취지는 무엇이며, 무료 전환에 따라 기존 시립박물관 운영에 악영향은 없는지?

< 답 변 >

○ 신현환 의원,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

- 시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의 취지는 시민들의 문화향유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며, 현재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박물관에서도 이미 무료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른 시립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6. 토론요지

- 가. 찬 성 : 박승희, 신현환, 강병수, 김기홍, 박순남, 신동수, 제갈원영 위원
- 나. 반 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을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전시실 및 시설의 사용”을 “관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 기획전”이라 한다)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
2.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 제목 “(무료관람)”을 “(자체기획전 무료관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료”를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8세 이하 또는”을 “취학전 아동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제7조제1항 중 “발행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대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립박물관 : 기획전시실, 석남홀, 우현마당
2. 송암미술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정원
3. 검단선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전시용 슬로프
4. 한국이민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5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22조 앞의 “제3장 운영위원회”를 “제4장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7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7조 다음에 “제4장 심의회”를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박물관유물의 정의 등) ① 박물관유물(이하 “유물”라 한다)라 함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② 유물의 구입 및 기증과 관련하여 고증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

가심의회를 소집한다.

③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및 기증 등 수집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2. 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등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0조(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① 구입 등 수집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1조 앞의 “제5장 유물 수집”을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자료구입)”을 “(유물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장”을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박물관”을 “실무위원회”로, “심의회 위원들의”를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료”를 “유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자료기증)”을 “(유물기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를”을 “유물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

을 경우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자료기탁)”을“(유물기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를”을 “유물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료”를 “유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는”을 “유물은”으로, “자료와”를 “유물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자료”를 각각 “유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자료관리)”를“(유물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를 “유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는 일반자료와”를 “유물은 일반유물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자료”를 각각 “유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자료를”을 “유물을”로 하고,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을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는”을 “유물은”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이용 및 대여”를 “박물관 운영 등”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자료이용과 대여)”를“(유물이용과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를 “유물”로, “박물관자료”를 “유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를 각각 “유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료를”을 “유물을”로, “별표 1”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술조사”를 “학술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유물을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하고 제7장 보칙 앞에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전시 해설사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제15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50,000	
	영상실(석남홀)	4시간	40,000	
	우현마당	1일	30,000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강 당	4시간	20,000	
	정 원	1일	35,000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20,000	
	전시용 슬로프	1일	10,000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강당	4시간	30,000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야간(18시 이후),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별표 2】

박물관 유물 이용료 (제37조 관련)

구 분	수 량	이 용 료
사 진 촬 영	1 점	30,000원
탁 본	1 점	30,000원
모 조(실 측)	1 점	30,000원
모 사(실 측)	1 점	30,000원
사진원판사용	1 점	디지털 10,000원 스캔(허가) 5,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u></p> <p>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u>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u></p> <p><u>제2장 전시실 및 시설의 사용</u></p> <p>제5조(관람료) ① 「<u>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u>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② <u>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u>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u></p> <p>제2조(적용의 범위) ----- ----- <u>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u>----- -----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관람</u></p> <p>제5조(관람료) ① <u>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u></p> <p>1. <u>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 기획전”이라 한다)와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u></p> <p>2. <u>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 (이하 “대관 전시”라 한다)</u></p> <p>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u></p>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생략)
2.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 9. (생략)
<신 설>

10. (생략)

제7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전시실 관람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말 것
2. 허가 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지 말 것. 다만, 연구의 목적으로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지 말 것
4. 박물관 안에서는 흡연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1. (현행과 같음)
2. 취학전 아동과 -----
3. ~ 9. (현행과 같음)
10.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7조(관람권) ① -----

발행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 설>

제11조(사용의 허가) ① 시설(기획전시실·영상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대관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립박물관 : 기획전시실, 석남홀, 우현마당
2. 송암미술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정원
3. 검단선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전시용 슬로프

제15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22조(박물관운영위원회) 법 제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 ⑤ (생략)

⑥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박물관 자료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4장 심의회

제28조(심의회 구성) ① 제23조제6항에 따른 심의회는 분야별로 3명 이상으로 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4. 한국이민사박물관 : 기획전 시설, 강당

제15조(사용료) ① -----

----- 별표 1과 같다.

제4장 -----

제22조(박물관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제28조(박물관유물의 정의 등) ① 박물관유물(이하 “유물”라 한다)라 함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보존·

② 위원은 각 분야별 박물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3.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시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② 유물의 구입 및 기증과 관련하여 고증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물평가심의회를 소집한다.

③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및 기증 등 수집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2. 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등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

제30조(회의 등) ① 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0조(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① 구입 등 수집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회

제5장 유물수집

제31조(박물관자료의 정의 등) ①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② 자료의 고증·감정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소집한다.

③ 자료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자료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 한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③ 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삭 제>

제31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유물구입) ①

----- 소장-----

② --- 실무위원회-----
-----심의회

의 -----

③ -----

-----시장-----

결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홈 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자료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후단신설>

②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자료기탁)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

④ 유물

제33조(유물기증) ①

유물을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유물기탁) ①

유물을

② 유물

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기탁 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제35조(자료관리) ① 시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

③ ----- 유물은 -----
----- 유물과 -----

④ -----

----- 유물 -----

⑤ -----

----- 유물 -----

제35조(유물관리) ① -----
유물에 -----

② ----- 유물은 -----
----- 일반유물과 -----

③ 유물 -----

④ ----- 유물 -----

한 경우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장고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6장 이용 및 대여

제37조(자료이용과 대여) ① 자료의 이용이라 함은 박물관자료에 대해 모사·사진촬영·복제·복사·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라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

제36조(수장고관리) ① -----

----- 유물-----

----- 유물을 -----

----- 유물을 -----

② ----- 유물

은 -----

제6장 박물관 운영 등

제37조(유물이용과 대여) ① 유물

----- 유물

② -----

유물-----

----- 유물에-----

③ ----- 유물을 -----

----- 별표 2-----

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학술목적 -----

④ 소장유물을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전시해설사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p><u>제38조</u> (생략)</p> <p><u>제39조</u> (생략)</p>	<p>② <u>교육·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u></p> <p><u>제40조</u> (현행 제38조와 같음)</p> <p><u>제41조</u> (현행 제39조와 같음)</p>
---	---